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계약금액 조정으로 보전 가능

조달청, 계약금액조정 가능 유권해석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급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을 계약금액 조정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인 (주)정풍개발(대표 임종혁·정해성)이 최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급에 따른 계약변경 여부를 조달청에 질의한 결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 정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달청의 유권해석은 공사원가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보험료 지급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어서 설비건설업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주)정풍개발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국민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산입하게 돼 있으나 4대 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산입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산출

내역서 상에 산입돼 있어야 하지만 누락된 것이므로 마땅히 신규 비목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냈었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강화되어 건설현장에 1개월 이상 채용되는 모든 일용근로자들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됐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업체로부터 강제 징수하고 있어 설비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제조업인 경우 원가상승요인이 발생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되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원가에 명시되지 않은 법정경비를 전문건설업체가 고스란히 6.47%(국민연금 4.5%, 건강보험 1.97%)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수행과 건설근로자의 보험혜택 부여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되고 회계예규에 명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이로 인해 재경부 등 정부부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공사원가반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가계산준칙의 관련조항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명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11월 중 법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